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1가단1110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호석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20.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8. 접수 제253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20.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8. 접수 제253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20.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8. 접수 제25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20.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8. 접수 제25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20.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4. 접수 제45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20.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G는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4. 접수 제453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I, J(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K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K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12. 19.경 주식회사 H(이하 ‘H’)와 사이에, H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은 분양하여 H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L 주식회사(이하 ‘L’)는 2008. 2. 21.경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08. 3. 1., 준공예정일 2009. 5. 15.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2009. 7. 16. 위와 같이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09. 10. 8.경 지상 5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6층 골조공사를 하던 중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5. L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골조공사를 하고도 L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287)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결과 ‘L은 원고에게 966,965,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2. 12. 12. 선고되었다[위 소송의 최종 결과는 ‘L은 원고에게 1,020,495,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3나7785 판결)의 2016. 2. 11. 확정이다]. 한편 L은 2013. 5. 28. 이 사건 조합과 H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기성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3570)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결과 ‘이 사건 조합과 H는 연대하여 L에게 13억 57,426,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4. 7. 16. 선고되었다[위 소송의 최종 결과는 ‘원고에게, ① H는 1,797,0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조합은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26,354,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44248 판결)의 2016. 2. 1. 확정이다].

라.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28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① 2014.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899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 L, 제3채무자: 이 사건 조합, 청구금액: 1,404,829,054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L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3570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위 청구금액)을 받았고, 이는 2014. 8. 6.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고 2014. 8. 28.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 전부명령'), ② 2015.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121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 L, 제3채무자: H, 청구금액: 1,404,829,054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L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3570 사건에서 H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위 청구금액)을 받았고, 이는 2015. 4. 13. H에 송달되고 2015. 5. 2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전부명령').

마. 이 사건 건물 중 ① 제10층 M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2020.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제11층 N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2020.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제11층 O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2020.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제12층 P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2020.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⑤ 제12층 Q호([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2020.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⑥ 제13층 R호([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2020.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바.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H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1) 소극재산: 총 12,105,527,040원 상당

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7785 판결금 채무에서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금액을 공제한 1,376,688,922원 상당

나)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무 1,404,829,054원 상당

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 20,514,790원 상당

라) 근로소득세 651,920원 상당

마) 서울특별시에 대한 취득세 22,762,250원 상당

바) 파산자 주식회사 S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7485) 5,335,273,973원 상당

사) 파산자 주식회사 S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40639) 1,400,000,000원 상당

아) 주식회사 T에 대한 채무 496,456,631원 상당

자) U에 대한 채무(집행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603) 420,162,481원 상당차) V에 대한 채무(집행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603) 358,878,686원 상당

카) W에 대한 채무(집행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603) 437,711,749원 상당

타) 주식회사 X에 대한 채무(집행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7482) 831,596,584원 상당

2) 적극재산: 총 8,257,008,432원 상당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명21035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채권 합계 3,449,842,432원 상당

나) 이 사건 건물 Y, Z, AA, AB, AC, AD, AE, M, N, AF, O, P, Q, R호 합계 4,807,166,000원 상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4, 15, 17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이 2015. 5. 22. 확정됨에 따라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H에 송달된 2015. 4. 13.로 소급하여 L의 H에 대한 피전부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의 확정에 앞서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이 먼저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은 소멸한 집행채권을 기초로 발령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비록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조로 피전부채권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전부채권자로서는 피전부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피전부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권한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피전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은 그 확정에 앞서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이 확정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 행사로 인한 H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위 피전부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 행사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집행채무자인 L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제3채무자에 불과한 H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로서 H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가 이전받은 H에 대한 채권은 H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위 인정사실 및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의하면, H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4.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2020. 4.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2020. 4.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2020. 6. 1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2020. 10. 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에게, 2020. 10. 27.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에게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의 이러한 처분행위는 H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H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과거 H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M호 AG, N호 AH, O호 AI, P호 AJ, Q호 AK, R호 AL)로부터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분양자들의 날인, 피고 D의 서명과 날인 및 피고 E, F의 날인이 없고 양수인·양도인 란의 기재가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며 피고들과 위 수분양자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의한 뒷받침이 없는 각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을 제1호증)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 8호증만으로는 위 가항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과 위 수분양자들 사이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 도과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의 선의항변은 그 전제가 되는 위나항 기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H가 피고들과 체결한 주문 기재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만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3층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3층 715.91㎡

지하 2층 780.54㎡

지하 1층 780.54㎡

1층 523.89㎡

2층 561.19㎡

3층 561.19㎡

4층 399.72㎡

5층 399.72㎡

6층 399.72㎡

7층 399.72㎡

8층 399.72㎡

9층 399.72㎡

10층 399.72㎡

11층 349.24㎡

12층 287.50㎡

13층 231.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50㎡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3층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3층 715.91㎡

지하 2층 780.54㎡

지하 1층 780.54㎡

1층 523.89㎡

2층 561.19㎡

3층 561.19㎡

4층 399.72㎡

5층 399.72㎡

6층 399.72㎡

7층 399.72㎡

8층 399.72㎡

9층 399.72㎡

10층 399.72㎡

11층 349.24㎡

12층 287.50㎡

13층 231.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76.91㎡

3.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3층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3층 715.91㎡

지하 2층 780.54㎡

지하 1층 780.54㎡

1층 523.89㎡

2층 561.19㎡

3층 561.19㎡

4층 399.72㎡

5층 399.72㎡

6층 399.72㎡

7층 399.72㎡

8층 399.72㎡

9층 399.72㎡

10층 399.72㎡

11층 349.24㎡

12층 287.50㎡

13층 231.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67.17㎡

4.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3층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3층 715.91㎡

지하 2층 780.54㎡

지하 1층 780.54㎡

1층 523.89㎡

2층 561.19㎡

3층 561.19㎡

4층 399.72㎡

5층 399.72㎡

6층 399.72㎡

7층 399.72㎡

8층 399.72㎡

9층 399.72㎡

10층 399.72㎡

11층 349.24㎡

12층 287.50㎡

13층 231.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20.55㎡

5.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3층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3층 715.91㎡

지하 2층 780.54㎡

지하 1층 780.54㎡

1층 523.89㎡

2층 561.19㎡

3층 561.19㎡

4층 399.72㎡

5층 399.72㎡

6층 399.72㎡

7층 399.72㎡

8층 399.72㎡

9층 399.72㎡

10층 399.72㎡

11층 349.24㎡

12층 287.50㎡

13층 231.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20.55㎡

6.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3층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3층 715.91㎡

지하 2층 780.54㎡

지하 1층 780.54㎡

1층 523.89㎡

2층 561.19㎡

3층 561.19㎡

4층 399.72㎡

5층 399.72㎡

6층 399.72㎡

7층 399.72㎡

8층 399.72㎡

9층 399.72㎡

10층 399.72㎡

11층 349.24㎡

12층 287.50㎡

13층 231.08㎡

(전유부분외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92.34㎡

